

거창여자고등학교 한시적 기간제 조리실무사 채용 공고

※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,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니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여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
1. 채용 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

직종명	채용인원	근무기간	근무시간	담당업무
한시적 기간제 조리실무사	1명	채용일자 ~ 2025. 2. 28.	(교대근무) 1조: 6:00~14:00 2조: 11:00~19:00 ※근무시간 협의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급식품의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, 청소 ○ 영양사의 지시사항 이행 및 조리사 업무 보조 ○ 기타 학교장이 분장하는 업무 ○ 기숙사 운영으로 1일 3식을 급식하며, 연장근로 발생함

2. 근로조건 및 보수 등

가. 근로계약기간: 직종별 상이(상단 표 참고)

※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됩니다.

※ 정규 교육공무직원의 결원·휴직·휴가 등에 따른 기간제 또는 대체근로자는 계약기간

중이라도 정규 교육공무직원이 배치되거나 복직할 경우, 배치·복직 전일에 계약이 종료됨

나. 근로일: 월요일~금요일

다. 근로시간: 직종별 상이(상단 표 참고)

※ 기숙사 운영으로 1일 3식을 급식하며, 연장근로가 발생함(수당 지급)

라. 휴일 및 휴가: 「근로기준법」, 「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」 및 단체협약에 따름

마. 근무장소: 거창여자고등학교 급식소

바. 보수 등 처우: 매년 교육공무직 임금 지급기준 및 사업부서 계획에 따름

(무경력자 만근 기준: 세전 218만원 이상, 연장근로 시간당 단가 15,600원 이상)

- 지급형태: 월급제 (급여유형·급여액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- 4대 보험 가입(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)

-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「경상남도교육감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」 따름

3. 응시자격

가. 「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」제8조(신규채용제한)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
관련 법령

❖ 「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」(2021. 4. 10.)

제8조(신규채용제한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「후견등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밝혀진 자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
6. 「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성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
7. 「아동복지법」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
8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9.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한 자
10. 경력 또는 학력,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
11. 기타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

나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

관련 법령

❖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
4. 채용기준 및 방법

가. 채용기준

-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가장 먼저 지원한 응시자

나. 채용(시험) 방법: 응시원서 제출

5. 제출서류

1차 접수 시 제출서류	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응시원서 [별첨 1]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력증명서(해당자) [별첨 2] 자격증 사본(해당자) 주민등록등본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, 보건증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[별첨 3] 공정채용 확인서 [별첨 4]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[별첨 5]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[별첨 6]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[별첨 7] 	각 1부

6.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: **2024. 6. 4.(월) 9:00 ~ 채용일까지**

(단, 방문접수는 평일 9:00~16:00에 가능합니다.)

나. 접수장소: 거창여자고등학교 행정실

다. 접수방법: 본인 직접 방문 또는 전자우편(gcgh@korea.kr)

※ 응시원서는 접수마감일 16:00까지 접수처(전자우편) 도착분에 한함

※ 전자우편으로 응시원서 제출 시 작성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(응시원서를 촬영하여 제출 금지)

※ 전자우편으로 제출 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, 미확인 시 관련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
※ 대리접수 불가능

라.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

마. 최종합격자 발표: 응시원서 제출 후 합격자에게 문자로 개별통보

7. 채용서류 반환

가.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

나.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: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

다.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: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

라. 반환기한: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

마. 채용서류 파기: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

바. 기타: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사.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

8. 유의사항 및 기타

- 가.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,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※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6조(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)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나.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 청구 할 수 있으며,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.
- ※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
- 다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(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)하여야 합니다.
- 라.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·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·임용이 취소됩니다.
- 마.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.
- 바.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사. 채용 관련 문의 사항은 행정실(☎055-942-3910), 업무 내용 관련 문의 사항은 급식소(055-942-391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학교 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·읍 죽전1길 72(거창여자고등학교) 행정실

2024. 6. 3.

거창여자고등학교장